

실습장 운영 규정

제정 1994. 08. 29.

제 1차 개정 2016. 08.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한다) 실습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8.10)

제2조(실습장의 정의) 실습장이라 함은 본교 실습에 관한 수업 또는 실험실습 지원, 교원의 학술연구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각종 가축과 토지, 도로, 초지, 사료포, 축사, 약용식물 재배, 야생화단지 및 부속시설 및 기계장비를 포함한다.(조 명칭 및 개정 2016.08.10)

제3조(위치) 본교의 실습장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 1길 194-14번지로 한다.
(개정 2016.08.10)

제2장 운영조직

제4조(경영권) 실습장의 경영권은 총장에게 있다.(개정 2016.08.10)

제5조(관리인력) 실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인력을 구성한다.(개정 2016.08.10)

1. 실습장장 - 1명(개정 2016.08.10)
2. 삭제 (2016.08.10)
3. 관리팀장 또는 관리직원 : 정규직원 또는 계약직원으로 구성하며 본교 인사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16.08.10)
4. 사양관리 기사 - 1명 : 전문기능을 구비한 직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16.08.10)

제6조(직무) ① (삭제 2016.08.10)

- ② 실습장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08.10)
 1. 실습장의 일상관리에 대한 조치 및 소요예산 청구에 관한 사항(개정 2016.08.10)
 2. 실습장관리직원의 인사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6.08.10)
 3. 실습장경영관리에 관한 서류의 유지,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8.10)
 4. 실습장운영 예산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6.08.10)
 5. 실습장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개정 2016.08.10)
 6. 실습장운영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 및 시설 증, 개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6.08.10)
 7. 삭제(2016.08.10)
 8. 가축의 도태, 매각 및 구입신청에 관한 사항
 9. 기타 실습장운영 실무에 부수된 사항(개정 2016.08.10.)
- ③ 관리팀장 또는 관리직원은 실습장의 운영, 회계 및 서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시설관리, 생산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항 신설 2016.08.10.)
- ④ 사양관리기사는 실습장장의 지시에 따라 가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항 신설 2016.08.10.)
(조 명칭 변경 2016.08.10.)

제7조(사양관리직원) 삭제(2016.08.10)

제3장 실습장관리위원회(장 명칭 변경 2016.08.10.)

제8조(실습장관리위원회) 실습장운영의 합리화 및 객관화를 위하여 실습장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 명칭 변경 및 개정 2016.08.10.)

제9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생명자원과학대학장과 실습장장을 포함하여 전문분야별 전임교원 약 간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08.10)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실습장 운영규정의 개정(개정 2016.08.10)

2. 실습장운영 예산 및 결산 심의(개정 2016.08.10)

3. 실습장시설물 증,개축의 타당성 심의(개정 2016.08.10)

4. 실습교육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5. 총장이 의뢰한 실습장운영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개정 2016.08.10)

6. 실습장장이 의뢰한 전문기술 사항에 대한 대책수립(개정 2016.08.10)

7. 기타 실습장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타당성 심의(개정 2016.08.10)

제4장 재정

제12조(회계) 실습장의 회계는 별도로 할 수 있다.(개정 2016.08.10)

제13조(사업년도) 실습장사업 및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개정 2016.08.10)

제14조(예결산 보고) 실습장장은 실습장의 예산과 결산을 실습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기획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08.10)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626, 2016.08.10)

이 규정은 2016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